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민원처리기간 정비 (안 별지 제1호서식, 제3호서식, 제5호서식, 제6호서식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서식의 민원처리기간 정비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의 민원 처리기간 14일을 본문 제4조제2항의 20일과 일치하도록 현행화
- 별지 제3호서식, 제5호서식, 제6호서식의 민원처리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, 7일에서 즉시로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 제고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민원처리기간 명확화로 민원인 편의 제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민원처리기간 정비 (안 별지 제2호서식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비영리법인 수의 증가로 장기 미활동 방지 등 관리 강화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비영리법인 허가증 뒷면에 “각종 제출의무 위반”을 허가 취소사유로 명시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법인의 정기적 실적보고 등 제출 의무를 강조하고, 장기 미활동시 설립허가 취소 근거를 명확화하여 법인 관리 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사항 없음